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 제2026-17호**

시정명령 재결

2026년 1월 22일 인천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6-17호(시정명령 재결공고[인천해심 제2026-003호  
(예인선 광진107호 부두접촉사건)])**

사 건 명 : 예인선 광진107호 부두접촉사건

피요청자 : (주)재\*\*\*(\*\* \*\*\*\* : \*\*\*\*\*-\*\*\*\*\*, \*\*\*)

인\*\*\*\* \*\* \*\*\*\*\* \*, \*\*\*\*(\*\*\*\*)

귀사가 용선한 광진107호가 인천항 내 SK인천석유화학 제4돌핀에 접촉한 사건이 2024. 11. 27. 16:42경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두접촉사건은 광진107호 1등 항해사가 입항 중 항해장비에 이상이 발생하자 경계 및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한 채 항해장비를 점검하는 동안 선박이 항로 밖으로 이탈해 발생한 것이나, 귀사가 선장 등 승무정원을 지키지 아니하고 운항하도록 지시한 것도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사가 승무정원증서에서 정한 승무정원 이상의 선원을 승무시키고 선박을 운항시켜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사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니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